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9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63390 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원 고	[redacted]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8. 23.
판 결 선 고	2017. 9. 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redacted]시 A 외 1필지 지상 B 72개동에 관한 재산세 등 9,106,244원에 대한 감면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9

가. 원고는 수탁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redacted] 주식회사로부터 신탁받은 [redacted]시 [redacted]구 A 외 1필지 지상에 단독주택단지인 'B' 73개동(이하 그 중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 6. 1. 전인 2015. 5. 13. C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1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72개동을 통틀어 '이 사건 단독주택단지'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이 사건 단독주택단지에 관하여 2015. 5. 12. 사용검사를 받고, 2015. 5.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7.경 및 2015. 9.경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단독주택단지에 관하여 2015년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91,062,440원(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 · 고지하였고, 원고는 2015. 7. 31. 및 2015. 9. 30.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단독주택단지는 1동이 1세대를 구성하고 각 동의 층수는 2층, 연면적은 227㎡로 그 착공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내진보강설계가 적용되어 용인시장은 2016. 6. 21. 이 사건 단독주택단지에 관하여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28. 피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10%에 해당하는 9,106,244원에 대한 경감을 신청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위 다. 기재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감신청'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대림디앤아이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단독주택단지를 신탁받았음을 전제로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9

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7. 4. 14. 이 사건 재산세 등 중 재산세 1,096,960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34,930원 합계 1,131,890원, 지방교육세 218,860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6,380원 합계 225,240원의 환급을 결정하였다(이하 위 환급금을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2469 판결 등 참조).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9

다)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주택을 포함하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은 본문에서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6조 제1항 제5호는 '법 제18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각 규정에 의한 경감신청권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재산세 경감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경감신청을 하여야 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 본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제5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감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은 2010. 3. 3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따로 규정하기 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2조[1]와 그 취지가 동일하다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9

할 것인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감요건이 충족되면 재산세는 당연히 경감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경감신청이나 과세관청의 경감결정이 필요적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6414 판결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가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에 의한 경감신청은 경감을 받으려는 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로 경감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신청이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경감에 대한 법규상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미리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과세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반드시 위 감면 여부 결정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과과세 방식에 의하는 재산세 등에 있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아닌 위 감면 여부 결정이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2항에 의한 과세관청의 결정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거나 그 거부행위가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9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경감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설령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경감을 요구할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15. 6. 1.부터 30일이 경과한 2016. 6. 28. 비로소 이 사건 경감신청을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이를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세 경감신청에 관한 위 각 규정 이외에 달리 원고에게 재산세나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도 아닌 지역자원시설세의 경감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복규

판사 이용희

판사 박보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9

관 계 법 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주택을 포함하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감면 신청)

①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